

朝鮮後期 慶尙監司考 ◀▶

—특히 大邱留營에서 甲午更張까지의 在任監司를 中心으로—

張 仁 鎮
啓明大學校 圖書館

目 次

- I. 緒 論
 - 1. 研究目的
 - 2. 研究方法
- II. 朝鮮王政과 慶尙監司의 位置
 - 1. 監司制度의 沿革
 - 2. 監司의 機能
 - 3. 慶尙監司의 擇差
 - (1) 除 授
 - (2) 謝恩과 辭朝
 - ① 謝 恩
 - ② 辭 朝
 - (3) 到 任
 - (4) 任命 年齡
 - (5) 任 期
 - 4. 慶尙監司의 前歷
 - (1) 主要 歷官
 - (2) 除授當時의 官職
- III. 監司의 行政實態 및 文化事業
 - 1. 一般行政
 - 2. 賑 政
 - 3. 教 育
 - 4. 出版文化
 - 5. 選官 및 遷去
- IV. 慶尙監司 退任 후의 進路
 - 1. 顯職 및 榮譽之典
 - 2. 最高官職
 - 3. 著作活動
 - 4. 諡 號
- V. 結 語

IV. 慶尙監司 退任 후의 進路

朝鮮後期 文官職의 進路에 대해 考察해 보면 蔭職이나 文科에 及第한 者가 任職으로부터 正三品 堂下官인 通訓大夫에 이르기까지에는 個人的 資質이나 門閥 등에 의해 比較的 順坦하게 陞遷할 수도 있었으며, 다시 從二品인 嘉善大夫에 陞進하기까지에도 이들이 물론 文名과 學行 및 德望 등이 뛰어나야만 可能하겠지만 한편으로는 門閥이나 黨色 등 政治的 影響力에 의해 行하여 질 수도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正二品 이상 顯職의 陞進이나 文望에 의한 榮譽職의 경우는 個個人的

人稟이나 學問, 德望, 政治, 行政, 外交, 國王의 信任 등 각 分野에 걸쳐 뛰어나야만 可能하다고 할 것이다. 여기서는 在任 慶尙監司로서 退任 후 榮職이나 顯職에 登用된 者, 諡號를 追贈 받은 者 등을 文獻에 의거 考察해 봄으로써, 이들 監司에 대해 各人의 人稟, 文名, 學識, 德望 등을 파악할 수 있고, 나아가 在任時 本道의 政治, 行政 및 文化發展에 寄與한 功勞를 究明하는데 보다 더한 實效를 얻고자 하는 것이다. 한편 顯職이나 榮職의 경우는 生時의 業績으로 評價할 수 있으나 諡號는 死後 그 사람의 行績을 要約한 것이므로 매우 重視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1. 顯職 및 榮譽之典

慶尙監司의 顯職이나 榮譽之典을 살펴 볼 때 <表 15>와 같이 六曹判書 가운데 最高要職인 吏曹判書(冢宰)를 歷任한 者가 89人 37.4%이며, 臣下로서 萬人之上의 地位라 할 수 있는 領議政·左議政·右議政 등 相臣에 大拜된 者가 42人 17.6%, 文臣으로서 出將入相의 軍事指揮權을 掌한 閫帥가 30人 12.6%로 나타나므로 要職에 많이 陞進되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한편 文官으로서 最高의 榮譽職으로 推仰받았던 大提學(文衡)이 8人이고, 文名이 뛰어난 者로서 비록 大提學에 除授되지는 못했으나 그 한 段階 아래인 것으로 大提學에 被圈된 者가 13人, 다시 大提學 바로 아래 職級인 提學(文任)에 除授된 者는 43人으로 각 각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서 文衡과 文衡被圈 그리고 文任의 榮譽職을 받은 者가 都合 64人인 27%라는 점에서 在任 慶尙監司로서 文名을 認定받은 者도 많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또한 朝鮮 初期로부터 英祖朝까지는 대체로 議政府 六曹 등 2品 이상의 官員과 兩司長官 등으로 構成된 宰臣會議에서 清白한 官吏를 뽑아 清白吏에 錄選하는 制度가 있었다.¹²⁹⁾ 여기에 錄選되

129) 參考로 宣祖實錄, 卷137, 宣祖 34年 5月 癸丑 條를 보면, 2品 이상 宰臣會議에서 당시 柳成龍, 李元翼, 李時彥 등 13人에 대한 清白吏 抄選 實例와 그 후 同年 10月 庚辰 條에서 2品 이상이 다시 모여 被薦者 13人 가운데 4人을 最終으로 議選한 事實을 살펴볼 수 있다.

<表 15>

慶尙監司 顯職陞進 및 榮譽之典

區分	朝別 監司數	宣祖	光海	仁祖	孝宗	顯宗	肅宗	景宗	英祖	正祖	純祖	憲宗	哲宗	高宗	計	%	備 考
		6	15	28	10	13	40	6	41	19	21	10	13	16	238		
相 臣			2	4		3	8	1	12	2	5	3		2	42	17.6	吏曹判書 大提學
家 宰				4	1	8	8	1	21	8	14	8	8	8	89	37.4	
文 衡						2	1	1			2	1	1		8	3.4	大提學
闕 帥	2	1	6			2	9	1	7	1	1			30	12.6		
文 任					1		1		10	2	10	5	6	8	43	18.1	提 學
文衡彼圜				3			3		3	1			2	13	5.5		
清白吏	1	1	2			1	6							11	4.6		
勳 功 臣	2	1	3			1	1	1	2					10	4.2		
封 君	1	3	5	1			1		2					13	5.5		
耆老入社		2	3	1	4	12			10	2	7	6	3	55	23.1		
宗廟配享				1			2		2		2			7	3		
書 院	1	2	4			3	4		4		4		1	23	9.9		

資料：朝鮮王朝實錄，清選考。

면 該 當 事 者 는 물 론 그 子 孫 들 에 게 蔭 職 除 授, 加 資 등 朝 廷 에 서 여 러 모 로 優 待 와 特 典 이 뒤 따 랐 는 데 慶 尙 監 司 로 서 清 白 吏 에 錄 選 된 者 는 모 두 11 인 으 로 4.6% 의 數 值 를 보 이 고 있 다. 다 시 각 종 勳 · 功 臣 에 錄 選 된 者 는 10 인 이 4.2% 이 고, 勳 · 功 臣 또 는 功 臣 嫡 長 등 으 로 封 君 된 者 가 13 인 이 5.5% 로 나 타 나 고 있 다. 이 밖 에 도 朝 鮮 王 朝 에 서 는 儒 教 를 崇 尚 하 였 으 므 로 老 人 을 優 待 하 였 으 니 즉 70 歲 가 넘 는 文 官 으 로 正 二 品 이 상 되 는 老 人 이 待 遇 를 받 던 곳 인 耆 老 所 에 入 社 한 者 가 55 인 이 23.1%, 또 한 宗 廟 에 配 享 된 者 는 7 인 이 3% 로 각 각 나 타 나 고 있 다. 上 述 한 清 白 吏 錄 選 의 경 우 는 특 히 宣 祖 ~ 英 祖 朝 까 지 錄 選 된 者 가 모 두 77 인 이 데 여 기 서 11 인 이 錄 選 되 었 다 함 은 상 당 한 數 值 라 말 할 수 있 고, 勳 · 功 臣 의 경 우 도 純 祖 朝 이 후 는 制 度 의 으 로 찾 아 볼 수 없 으 므 로 實 績 이 低 調 된 것 이 다.

2. 最高官職

慶尙監司로서 退任한 후 最高官職에 陞進한 狀況을 살펴보면 <表 16>과 같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 가운데 正二品 이상 高位職에 陞進한 者는 148人으로서 全體 62.2%를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서 在任 중 卒逝한 者 10人을 제외하면 실제 65%가 高位職에 陞進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 外職 中에서는 最高 要職이라 하겠다. 이를 具體的으로 살펴보면 相臣에 이른 者는 앞서 言及한 바와 같이 42人인 17.6%이고, 吏曹判書에 이른 者는 47人인 19.8%이며, 吏曹判書를 제외한 각 曹의 判書에 이른 者는 32人으로서 13.4%로 나타나고 있다. 다시 議政府의 左 · 右 贊 成, 判 敦 寧 府 事, 判 中 樞 府 事 등 從一品職에 이른 者는 23人인 9.6%이며, 漢 城 府 判 尹 에 이른 者 도 3人 으 로 나 타 나 고 있 어 退 任 후 要 職 에 많 이 登 用 되 었 음 을 쉽 게 알 수 있 는 것 이 다. 그

밖 에 清 要 職 으 로 서 副 提 學 3人, 大 司 憲 12人, 大 司 諫 3人 등 三 司 長 官 에 이 른 者 는 모 두 18人 인 7.6% 이 며, 六 曹 의 次 官 인 參 判 은 32人 으 로 서 13.4% 에 이 르 고 있 다. 그 러 나 在 任 監 司 로 서 他 高 位 職 에 陞 遷 하 지 못 하 고 監 司 職 에 서 그 친 者 는 31人 인 13% 였 는 데, 이 가 운 데 慶 尙 監 司 로 서 在 任 中 에 死 亡 한 金 緞, 陸 性 善, 金 世 瑒, 洪 禹 寧, 黃 瑠, 李 義 綱, 李 在 秀, 李 鼎 臣, 俞 致 善, 南 一 祐 등 10人 의 監 司 를 제 의 하 고 나 면 불 과 21人 인 8.8% 만 이 監 司 職 에 서 더 이 상 陞 遷 하 지 못 했 다 는 것 을 알 수 있 어 慶 尙 監 司 의 職 責 은 左 遷 職 아 닌 陞 進 할 수 있 는 要 職 이 란 사 실 에 대 해 再 言 을 쫓 지 않 는 다 할 것 이 다.

3. 著作活動

在任 慶尙監司를 對象으로 하여 그 個人 一生의 遺稿를 調査함에 있어서는 여러 모로 많은 制約과 難點이 뒤따른다고 말할 수 있다. 朝鮮王朝를 통틀어 볼 때 文章家나 名臣을 포함한 有品官職者, 그리고 士人 · 處士로서 文名과 學行 있는 者는 대체로 遺稿를 남겼다 하겠는데, 遺稿의 內容을 보면 文集類가 主軸이 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이러한 文集類나 기타 著述에 있어서는 著作者的 生存 당시 刊行하는 예는 극히 드물고 다만 著作者가 平素 적어둔 詩, 書, 說, 箴, 雜著나 平素 師弟關係, 交遊關係, 黨派關係 등으로 往來가 있던 家門에서 著作者로부터 받은 詩, 挽詞, 書, 序, 跋, 祭文, 上樑文, 記, 銘, 墓碣, 墓誌文, 行狀 등과 官에 올린 呈書, 朝廷에 올린 上疏文, 表箋 등의 資料를 著作者的 子孫, 門人, 後孫 등이 蒐集 整理하여 刊行하는 것이 一般의 이다. 그러므로 文集類의 內容을 보아도 上述했음과 같이 詩, 疏, 書, 說, 箴, 序, 跋, 記, 銘, 上樑文, 祭文, 墓碣, 墓誌, 行狀 등을 體系의 으 로 編 輯 한 것 이 라 고 말 할 수 있 겠 다. 이 와 같 은 文 集

〈表 16〉

慶尙監司 退職 卒 最高官職 現況

職 別	朝 別		監司數													計	%	備 考
	宣祖	光海	仁祖	孝宗	顯宗	肅宗	景宗	英祖	正祖	純祖	憲宗	哲宗	高宗	238				
議 政			2	4		3	8	1	12	2	5	3		2	42	17.6		
左 右 贊 成	1	1				1	3		1					9	3.8			
判 敦 寧 府 事							2		3					6	2.5			
判 中 樞 府 事	1		1		2		1	2					1	8	3.3			
吏 曹 判 書			3	1	2	4	1	10	6	8	2	7	3	47	19.8			
(戶, 禮, 兵, 刑, 工) 判 書	1	3	3	1		5	1	2	2	2	1	5	6	32	13.4	左·右參贊 포함		
知 中 樞 府 事								1					2	3	1.3			
參 判	2	1	4	3	4	7	1	5	2	1	2			32	13.4			
左 · 右 尹	1		1	1				1						5	2.1			
大 司 憲		2	3	1		3	1	2						12	5			
大 司 諫						1	1		1					3	1.3			
副 提 學		2				1								3	1.3			
都 承 旨								1						1	0.4			
參 議		1	1			1								3	1.3			
監 司		3	8	3	1	5		1	4	3		1	2	31	13	卒逝監司 중 前職이 判書인 者 3人 포함		
計	6	15	28	10	13	40	6	41	19	21	10	13	16	238				

資料：朝鮮王朝實錄，清選考。

類와 기타 著述은 著作者가 그 당시 남겼다 해도 時代의 흐름과 여러 가지 事由로 인하여 傳承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으니, 그 事由를 들어 보면 첫째, 原稿를 그 家門에서 蒐集 또는 整理하지 못했을 경우와 둘째, 遺稿를 整理하여 抄는 하였으나 後孫 門人 등이 財力이 없거나 關心이 적어 刊行하지 못하는 경우 셋째, 整理하여 所藏하였던 遺稿抄를 刊行 이전에 遺失하였을 경우 넷째, 著作者가 黨爭 또는 각종 事件으로 被禍하였을 때 때로는 그 遺稿를 官에서 燒却하는 경우 등과 같은 事由로 인하여 著作物이 後世에 傳해지지 못하는 例가 많았다고 할 수 있다.

慶尙監司의 경우는 이들이 文科에 及第한 者 또는 南臺 出身의 學行 있는 者¹³⁰⁾ 라는 사실과 함께 翰林, 兩司, 玉堂, 銓郎 등 文望의 官職 出身이 대부분이고, 특히 高位職에 이른 名臣도 많았다는 점으로 미루어 이들이 平素 詩, 書, 說, 箴, 傳 등의 著述은 물론이고, 당시 世人들도 이들 監司 出身者에게 序·跋文을 비롯하여 墓碣, 墓誌, 行狀 등을 求하려는 者 심히 많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므로, 慶尙監司에 在任했던 者는 그 당시 文集 등 著作物을 個人 모두가 남겼을 것으로 믿어지지만 「奎章閣圖書韓國本總目錄」¹³¹⁾ 「韓國書誌年表」¹³²⁾, 「韓國古書綜合目錄」¹³³⁾ 등과 기타 參考資料를 土臺로 살펴볼 때 現在까지 傳해지고 있는 著作物의 數値는 매우 貧弱하다고 말할 수 있겠다. 이와 같은 實績은 앞서 論及한 바와 같이 後孫, 門人 등 有關人들이 原稿를 蒐集·整理하지 못했거나 財力이 없어 刊行하지 못했을 경우, 또는 遺稿抄의 遺失이나

기타의 事由로 인하여 刊行하지 못했다고 하겠다. 慶尙監司의 現存 著作을 調査해 보면 〈表 17〉과 같이 著述을 남긴 全體 監司는 112人으로 4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文集을 남긴 者는 52人인 21.8%, 文集을 제외한 기타 著述을 남긴 者는 60人인 25.2%로 각각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 著述을 가장 많이 남긴 監司는 純祖朝에 在任한 南公徹 監司로서 文集인 「金陵集」과 함께 「讀禮抄」, 「高麗名臣傳」 등 기타 著述도 6種을 남겼으며, 다시 仁祖朝의 李敏求 監司도 「東洲文集」을 포함하여 「讀史隨筆」, 「諫言龜鑑」, 「唐律廣選」 등 기타 3種의 著述을 남기고 있다. 그러나 肅宗朝에 在任한 徐文重 監司의 경우는 文集은 없으나 「海防誌」 「朝野記聞」, 「喪祭禮家範」, 「國朝大臣年表」 등 기타 著述을 7種이나 남기고 있어 博學의 一面目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4. 諡 號

諡號라는 것은 帝王, 卿相, 儒賢, 節臣들이 죽은 후 그들 生前의 功德을 稱頌하여 追贈하는 이름으로서 그 내용은 바로 對象人物 一生의 行蹟을 要約한 것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臣下로서 賜諡 받은 家門은 이를 매

130) 清選考(서울:文化財管理局藏書閣所藏, 1972, 影印本), 中 p. 296.

131) 奎章閣圖書韓國本總目錄, 서울大學校 東西文化研究所 編(서울:서울大學校出版部, 1965)

132) 尹炳泰 編, 韓國書誌年表(서울:韓國圖書館協會, 1972)

133) 韓國古書綜合目錄, 國會圖書館司書局 參考書誌課 編 (서울:國會圖書館, 1968)

〈表 17〉

慶尙監司 現存著作 現況

著作區分	朝 別														計	備 考
	宣祖	光海	仁祖	孝宗	顯宗	肅宗	景宗	英祖	正祖	純祖	憲宗	哲宗	高宗			
文 集 除 外	2	7	9	2	3	9	1	7		7	2	2	1	52	21.8%	
(文 集 除 外)			5		1	9	2	12	4	9	5	8	5	60	25.2%	
計	2	7	14	2	4	18	3	19	4	16	7	10	6	112	47%	

우 榮譽롭게 여겼으므로 本家에서는 諡號를 받는 날 迎諡宴을 베풀었으니, 즉 國王이 내리는 諡號와 이를 傳達하는 特使를 맞아 잔치를 베풀고 祝賀客을 맞는 등 그 榮光을 一世에 자랑하였던 것이다. 朝鮮王朝에서는 이와 같은 諡號를 받을 수 있는 者를 法으로 크게 制限하였으니 「大典通編」을 보면

「宗親及文武官實職正二品以上賜諡(親功臣則雖職卑亦贈…)大提學秩視正二品雖從二品大提學亦許賜諡 儒賢及死節人表著者雖非正二品特許賜諡」¹³⁴⁾

라 하여 宗親, 文武官으로서 正二品の 實職에 있었던 者는 諡號를 追贈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大提學은 비록 從二品이라도 賜諡를 許하였으며 親功臣이나 儒賢 또는 節義를 지키기 위해 生命을 犧牲한 사실이 뚜렷한 者에게는 비록 正二品이 아니라도 특별히 諡號를 追贈하였던 것이다. 한편 朝鮮時代 國王의 경우는 在位 당시나 薨한 후 王의 德을 稱頌하여 올리는 尊號와 함께, 薨한 후에는 太祖, 世宗 등으로 呼稱되는 廟號 외에도 諡號를 追贈했던 것이다. 이 때 諡號의 字數는 대개 8字로서 上諡했음을 알 수 있는데 특히 國初로부터 宣祖朝에 이르기까지는 이 같은 上諡와는 별도로 明나라 皇帝로부터 諡號를 追贈받기도 하였다.¹³⁵⁾ 朝鮮時代 諡號가 가장 긴 王은 世祖로서 諡號의 字數가 無慮 14字인데 「塔源系譜紀略」世祖 條에 의거하면

「世祖惠莊承天體道烈文英武至德隆功聖神明睿欽肅仁孝大王」¹³⁶⁾

라 하였으니 이를 細分해 볼 때 <世祖>는 廟號이고 <惠莊>은 皇明朝로부터 追贈받은 諡號이며, <承天體道烈文英武> 8字는 諡號와는 엄격히 區分되는 것으로 在位 당시 德을 稱頌하여 올렸던 尊號이며¹³⁷⁾, <至德隆功聖神明睿欽肅仁孝>의 12字가 諡號인데 여기서 皇明朝로부터 追贈받은 <惠莊>과 함께 14字의 諡號가 追贈되었음을 알 수 있다. 諡號를 追贈함에 있어서는 被賜諡者 生前의 實績에 따른 諡號의 種類나 內容의 議定이 先行되어야 하는데, 이와 같은 諡號의 種類나 內容은 諡法에 따라 行해져야 했다. 우리 나라 諡法에 관한 文獻으

로서는 「增補文獻備考」·「清選考」 등을 들 수 있는데 여기서 諡號의 種類를 大別해 보면 神, 皇, 帝, 堯, 舜 등을 포함하여 文, 忠, 貞, 恭, 襄, 靖, 良, 孝… 荒, 閔, 哀, 殤, 麥 등 183種으로 나타나고 있다.¹³⁸⁾ 하지만 183種만으로서, 당시 2字를 취하여 王이 賜諡했다는 점에서, 被賜諡者의 行績을 이것으로서 밝히기에는 사실상 不足하므로 183種의 諡號를 다시 內容別로 細分하였으니, 즉 文字諡號의 경우는 經天緯地, 道德博聞, 博文多見 등 15種으로, 忠字諡號는 危身奉上, 盛衰純固, 險不避難 등 10種으로 자기 細分하여 全體 諡號種數는 485種이나 되었다.¹³⁹⁾ 朝鮮時代 王이 賜諡하였던 諡號 가운데는 文字와 忠字를 가장 榮譽롭게 여겨 왔다. 특히 崇文崇儒를 國家의 統治理念으로 삼았던 朝鮮社會에서는 文字를 더 重視하였으니, 즉 文字諡號를 받게 되면 文章과 學識이 顯著하다는 뜻의 功績을 나타내므로 一世의 師表로 여겨 왔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文字 다음으로 忠字諡號의 경우는, 父에 대한 子의 孝, 君에 대한 臣의 忠 등 朝鮮時代 三綱五倫의 儒敎理念에 입각한 것으로서 특히 忠孝思想을 널리 勸獎하였는데, 君義臣綱에 의한 忠誠이 顯著할 때에는 文武官·庶民을 막론하고 贈諡이나 旌門을 세워 後代에까지 龜鑑이 될 수 있게 表彰하였고, 諡號 對象者에게는 死後 忠孝諡號를 내리기도 하였던 것이다.

한편 清白守節 등 節義派에게는 대체로 貞字諡號를 내렸으며 孝行이 顯著한 者는 孝字, 武勇이 뛰어난 者에게는 武字 등을 諡法에 따라 追贈하였다. 그러나 生前에 行檢이나 功績이 없고 物議가 있었던 者에게는, 특

134) 大典通編, 卷1 吏典, 贈諡 條.

135) 塔源系譜紀略에 의거할 때 朝鮮朝 國王은 대체로 8字의 諡號를 上諡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宣祖가 昇遐하자 皇明朝로부터 賜諡받은 宣祖의 諡號는 「昭敬」임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이 朝鮮朝 在位國王으로서의 마지막으 받은 皇明 賜諡이다.

136) 塔源系譜紀略(漢城: 高宗12(1875), 木板本), 世系, 15頁, 世祖 條.

137) 在位國王에게 올리던 尊號는 8字로 上尊號하였는데, 功德에 따라 加上尊號 또는 昇遐한 후에 追上尊號하기도 했다. 朝鮮時代 國王으로서 尊號가 가장 긴 王은 純祖로서 56字 였다.

138) 增補文獻備考, 諡號 條에는 全體 諡號 種數가 121種이지만 清選考, 諡法 條에는 183種으로 나타나고 있다.

139) 註130 同書, 中 pp. 640~645.

<表 18>

慶尙監司 謚號 現況

朝別 監司數 謚號	宣祖	光海	仁祖	孝宗	顯宗	肅宗	景宗	英祖	正祖	純祖	憲宗	哲宗	高宗	計	賜諡者	備 考
	6	15	28	10	13	40	6	41	19	21	10	13	16	238	(%)	
文		1	2		2	4	1	9	2	9	3	4	3	40	35.7	
忠	2	3	8	2	3	6	1	8						33	29.5	
孝				1			1	1			1	6	2	11	9.8	
貞	1					2		1	1					6	5.3	
肅			1					1		2				4	3.6	
靖					1	1		1			1			4	3.6	
翼						1		3	1					4	3.6	
正						1		1		1				3	2.6	
章		1				1								2	1.8	
淸						1						1		2	1.8	
恭						1		1						2	1.8	
景			1											1	0.9	
計	3	5	12	3	6	17	3	26	4	12	5	11	5	112	100.0	
%	50	33.3	42.9	30	46	42.5	50	63.4	21	57.1	50	84.6	31.2	47.4		

資料 : 淸選考, 增補文獻備考.

히 內外縱亂, 好樂怠政, 凶年無穀 등의 內容이 담긴 <荒>謚號나 去禮遠衆, 好內怠政, 好內遠禮 등의 內容인 <鳩>謚號, 滿志多窮의 <惑>謚號, 凶年無穀의 <糠>謚號, 貧而敗官의 <墨>謚號, 不悔前過의 <戾>謚號 등의 惡諡가 謚法에 따라 賜諡되기도 하였다.¹⁴⁰⁾ 이와 같은 여러 種類의 謚號를 決定함에 있어서는 禮曹, 吏曹, 弘文館 등 有關機關에서 엄격하고도 지극히 慎重하게 處理하지만, 議政府·司憲府·司諫院 등으로부터 많은 牽制도 뒤따랐던 것이다. 謚號를 받을 사람이 죽으면 本家에서는 行狀을 갖추어 該當官衙에 提出케 되어 있는데, 이 때 謚號를 決定하기까지의 過程을 알아보면

「通政以上文望顯職館閣及曾經九卿人撰行狀禮曹照訖付太常太常移送弘文館東壁以下三議三望東壁又與太常正以下更議定舍檢中一署並行狀報本曹入啓受點後兩司署經」¹⁴¹⁾

라 하여 正三品 通政大夫 이상으로서 文名과 德望있는 者, 高貴한 實職에 있었던 者, 弘文館이나 藝文館 官職에 있었던 者 및 議政府 左·右參贊, 六曹判書, 漢城府判尹 등 9卿을 지낸 사람이 그 行狀(謚狀)을 作成하여 禮曹에 바치면 禮曹에서는 行狀의 內容을 對照하여 照會를 마치고 題辭를 써서 奉常寺(太常)에 回附하고 奉常寺에서는 이를 弘文館에 移送하여 날짜를 정하여 應教 이하 3員이 會議하여 3望의 謚號를 짓는 것이며, 應教는 奉常寺正과 더불어 更議 決定하여 議政府의 舍人·檢詳 중 1人이 이를 署經하여 그 行狀과 아울러 吏曹에 報告하면 吏曹에서는 入啓하여 落點을 받은 후 兩司인 司憲府와 司諫院에서 署經하여 賜諡하는 것

이다.

慶尙監司로서 謚號를 追贈받은 者는 112人으로서 전체 監司 가운데 47.4%이며 追贈된 謚號의 종류를 대별해 보면 文, 忠, 孝, 貞, 肅, 靖, 翼, 正, 章, 淸, 恭, 景 등 12種으로 밝혀져 美謚號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追贈받은 謚號가 <文>字인 경우는 40人으로 謚號를 받은 全體人員의 35.7%로서 가장 많고, <忠>字는 33人인 29.5%, <孝>字 謚號가 11人인 9.8%, <貞>字가 6人인 5.3%로서 <表 18>과 같이 각각 나타나고 있다. 한편, 在任監司 내 被賜諡者의 比率을 각 朝別로 살펴보면, 比率이 가장 높은 朝는 哲宗朝인데, 즉 在任監司 13人 中 11人인 84.6%가 謚號를 받았음을 알 수 있고, 다음으로는 英祖朝로서 41人 가운데 26人으로 63.4%로 나타나며, 比率이 가장 낮은 朝는 正祖朝로서 在任監司 19人 中 불과 4人만이 謚號를 追贈받아 21%에 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文>字와 <忠>字 謚號를 追贈받은 者로서 이를 時代別로 살펴볼 때 英祖 이전의 在任監司는 <忠>字 謚號만이, 英祖 이후에는 <文>字를 많이 追贈하였음을 알 수 있어 英祖 이전에는 國王의 政策을 積極的으로 協助한 者로서, 英祖 이후에는 文名과 學德이 높은 者로서 慶尙監司에 除授되는 例가 많았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文>字나 <忠>字를 賜諡받은 監司가 73人으로서 전체 被賜諡者의 65.2%라는 數値는 바로 이들이 慶尙監司에 在任 당시 嶺南地方 文風振興에 크게 貢獻했을 것으로 評價할 수 있는 重要數値로 받아들여져야 할 것이다.

140) 上揭書, 中 p.644.

141) 註9 同書, 上 p.146.

〈表 19〉 慶尙監司 諡號追贈 對象者 中 未追贈者 原因分析

區 分	朝 別													計	%	備 考
	宣祖	光海	仁祖	孝宗	顯宗	肅宗	景宗	英祖	正祖	純祖	憲宗	哲宗	高宗			
削奪·追奪官爵	1		1		2				1					5	10.6	
賜 死			1					1		1				4	8.5	
流 配						2								2	4.3	
黨의 強硬派로 在職時 被彈		2			1	1			1					5	10.6	
在職時 職務疎忽, 貪虐, 刑杖濫用 등으로 被彈									1			1	2	4	8.5	
名臣 功臣 善政 贈職, 기타			1			3		5	4	3	2	1	8	27	57.5	
計	1	2	3		3	6		6	7	4	3	2	10	47	100	

資料：朝鮮王朝實錄，慶尙道先生案。

慶尙監司로서 당연히 諡號를 받을 수 있는 者로서 諡號를 追贈받지 못했던 者도 相當數로 나타나고 있으니 즉 〈表 19〉에 의하면 對象人員이 47인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追奪官爵, 削奪官爵, 賜死, 流配 등과 같이 각종 獄事로 被禍된 者가 11人인 23.4%이고 둘째, 光海朝 大北黨을 위시하여 특히 南人, 老論, 少論 등 所屬黨의 強硬派로서 官에 在職 당시 1次 또는 數次에 걸쳐 彈劾을 받은 經驗이 있는 者가 5人인 10.6%이며 셋째, 在職 당시 職務怠慢, 貪虐, 刑杖濫用 등으로 인하여 彈劾받은 經驗이 있는 者가 4人인 8.5% 넷째, 당시의 名臣 또는 善政을 베푼 자, 死後 公卿職에 追贈된 者, 官路가 比較的 順坦하였던 者 등으로서 諡號를 追贈받지 못했던 者가 27人인 57.5%로 나타나고 있어 注目되는데 「燃藜室記述」을 보면

「…雖平日無功德行譽者不敢不請諡或以煬以荒以惑亦不能辭近世此風頓革初則有物議之家恐得惡諡不爲狀請終則并與名臣大功而不爲請諡矣」¹⁴²⁾

라 하여 平日的 功勞나 德 또는 行檢이나 名譽가 없더라도 本家에서는 諡號를 請하였는데, 간혹 煬, 荒, 惑과 같은 나쁜 諡號가 내려져도 拒否하지 못하였으므로 近世에 와서는 風土가 변하여, 즉 처음에는 物議가 있는 집에서 惡諡를 얻을까 두려워 諡號를 請하지 않았던 것이 마침내는 名臣이나 大功이 있는 者도 諡號를 請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 上述한 3,4번째의 諡號 對象者 31人의 경우는 대체로 後孫들이 諡號를 請하지 않았을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특히 이 가운데 純祖朝 이후 在任하였던 慶尙監司의 경우는 朝鮮末期 外戚跋扈, 外勢侵略 등 政治·社會的 混亂으로 인하여 後孫들이 諡號를 스스로 포기했을 것으로 믿어진다.

V. 結 語

文獻을 중심으로 慶尙監司의 淵源과 機能을 살펴 볼 때, 最初의 慶尙監司는 高麗 文宗 32年(1078)의 李齊元 都部署使로부터 비롯되었으며, 都部署使라는 職名은 그 후 按察使, 提察使, 按廉使, 都觀察黜陟使 등으로 變遷해 왔는데, 특히 觀察使(監司)라는 名稱이 最初로 사용된 것은 朝鮮初期로서 그 時期는 世祖 11年(1465)이었다는 事實을 위에서 살펴 보았다. 監司의 機能面에서는 兵馬 水軍의 總責인 兵馬節度使와 水軍節度使를 비롯하여 巡察使를 兼하였고 時代의 흐름에 따라 대체로 大丘都護府使를 겸職하였으며, 刑政에서는 笞·杖·徒·流·死 등 5刑 가운데 流刑 이하를 直斷하는 權限을 掌握하므로써 行政, 刑政, 軍政 등 3權을 統轄하는 職責이란 것을 考察하여 보았다.

監司職에 任用되어서 到任하기까지에는 一般的으로 除授, 謝恩과 辭朝, 到任 등 3段階를 거쳐야 하였다. 먼저 除授 節次로서는, 一定한 資格을 갖춘 者에 의해 對象監司를 銓曹에 推薦하면 銓曹에서는 三望에 의한 國王의 落點으로 除授하였는데, 除授에 앞서 相避 規定이나 年齡, 居住地 등에 따른 制約이 뒤따랐으며, 때로는 國王에 의해 特除되기도 하였으나 兩司를 포함한 有關機關의 牽制로 改差되기도 했음을 살펴 보았다. 監司職에 除授된 者는 除授된 그 翌日에 國王과 王妃, 世子宮에 謝恩肅拜를 드려야 했으며, 얼마간 赴任準備를 끝내고서는 다시 國王에게 下直人事를 올려야 했는데, 이를 辭朝라 하였다. 이와 같이 辭朝를 마치게 되면 바로 任地로 赴任하였는데 특히 監司의 任期 計算은 除授나 到任日이 아닌 辭朝日로부터 始計하였다는 것과 함께 事務의 引繼引受도 監營이 아닌 慶尙道關門인 開慶 鳥嶺의 交龜亭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도 살펴 보았다. 그리고 慶尙監司의 年齡을 보면 監司는 一道를 專制하는 要職인 관계로 年少者 또는 高齡者에 대

142) 註40 同書, 別集, 卷10 官職典故, 議諡 條.

한 職의 除授는 多少나마 制限하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在任監司의 年齡이 50~54歲가 가장 많았다는 점에서 比較的 政治經驗이 많은 者로서 除授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다. 또한 監司의 任期는 朝鮮國初로부터 대체로 1년이었으나 監司가 府尹·牧使·府使 등 監營 所在地의 行政官을 兼職할 때에는 任期를 2年으로 하였는데, 英祖 33年(1757)부터는 2年으로 制度化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 任期는 잘 지켜지지 않았으니 즉 朝鮮後期 勢力層이 대체로 外職을 忌避함과 아울러 監司職에 在任하고 있는 者들도 留任보다는 呈辭나 瓜報 등으로 遞任을 바랐던 者가 많았다는 事實을 알 수 있겠다.

監司의 前資를 究明해본 결과, 監司는 文臣으로 任命하는 官職이므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文科에 及第해야 하였으니, 慶尙監司의 文科及第現況을 보면 238人 가운데 235人이 文科에 及第하였던 것이다. 다시 主要 歷官을 보면 淸要職인 翰林에 被選된 者가 85人인 35.7%, 兩司 즉 司憲府, 司諫院 官員이 230人인 96.6%, 玉堂官員이 181人인 76%, 그리고 銓郎이 51人인 29%로 각각 나타나고 있어 慶尙監司는 文望과 學德이 뛰어나았음은 물론 強直하고 言行이 바른 者라는 사실을 찾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들이 嶺南의 文風振興에 貢獻한 바 컸다고 말할 수 있겠다. 또한 奎章閣臣, 春坊官員, 大司成을 비롯하여 他道 監司를 經驗한 者도 많았으니, 즉 嶺南地方은 他道에 비하여 地理의 位置나 廣大한 地域과 人口, 儒學을 崇尚하는 風俗 등으로 政治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볼 수 있는 만큼 政治나 行政經歷이 豊富한 者라야 本道監司에 適格 除授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다. 慶尙監司에 除授 당시 前職의 경우는 遞兒職이나 前職未詳者를 제외하고서 內職에서 除授된 者는 132人인 55.5%이고, 外職에서 除授된 者는 60人으로 25.2%를 나타내고 있어 주로 內職에서 本道 監司에 많이 除授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특히 前職 가운데는 承政院의 承旨나 承旨를 歷任한 者가 크게 두드러지고 있다는 점에서, 특별히 王의 秘書로서 信任이 두터운 者를 監司職에 많이 除授하여 窮極의으로는 王權強化政策에 그 目的이었다는 사실도 考察해 보았다. 이 밖에도 他道監司에서 除授된 者는 20人, 地方守令 出身이 40人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英祖 이전에는 承旨나 參議, 牧·府使 등이 많았음에 비하여 英祖 이후에는 判書나 判尹, 監司 등 官品 높은 高位職에서 많이 除授되었다는 점에서, 朝鮮末期로 오면서 政治에 經歷이 豊富한 者로 하여금 道政全般에 善政을 期待한 措處로 볼 수 있다.

監司의 行政과 그 實態에 관하여 알아볼 때, 一般行政面에서는 監營의 都事, 中軍을 위시하여 71邑 守令

과 11個處 馬政官인 察訪, 그리고 教育을 擔當하는 教授·訓導 등을 指揮 監督하고, 每年 2回 이들의 勤務成績을 評定하여 中央에 報告, 善政한 官員에게는 褒賞 陞進계 하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官員은 改差 左遷시켰으니 이는 一道의 政治가 莫重함과 아울러 監司職의 重要性을 말해주는 制度上的 特權이라 하겠다. 때문에 監司의 政治 가운데 重要的 것은 近民之官이라 할 수 있는 管下諸道 守令의 職務와 行政에 대해 많은 關心을 가져야 했던 것이다. 監司는 자 邑을 巡廻하면서 守令의 잘 잘못을 가려 褒貶하는 일 외에 地方民의 疾苦나 弊害를 덜게 하는 등 風俗과 民政을 잘 다스리는 것이 緊要事이며, 한편으로는 該道內 學行 있는 人才를 朝廷에 薦擧하여 道民이 學問에 힘쓰도록 措處함과 아울러 三綱에 模範이 되는 者에게는 朝廷에 恩典을 要求하는 등 一道의 民風醇化行政에 많은 寄與를 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監司에 대한 민의 請願事項도 朝鮮時代에 살다간 人物의 文集類를 보면 學行이나 忠孝烈 등 三綱에 관한 請願이 太宗을 이루고 있는데, 특히 8道 가운데 嶺南地方의 請願事項이 압도적으로 많았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좋은 例라 하겠다.

朝鮮時代 慶尙道는 旱害를 포함한 각종 災害의 발생이 他道에 비하여 尤甚했던 만큼, 이와 같은 災害가 발생하여 持續될 때 監司는 賑救策을 慎重하게 講究하여야 했다. 그러나 때로는 監司가 職權으로 收拾할 수 있는 行政的·財政的 힘이 弱한 관계로 朝廷의 賑恤政策이 彌縫策에 그치는 事例가 많아 民이 禍를 입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는 것이 사실이다. 당시 主要 救荒策을 「朝鮮王朝實錄」에 의거해 본 결과, 監司가 租稅減免이나 貢物廢止 등 恤典을 要求하기도 하고, 때로는 空名告身의 發行을 요구하여 그 收入穀으로서 賑資에 補充기도 하였으며, 한편으로는 官吏의 俸祿을 停 또는 減하기도 하였고, 官職을 革罷하여 國家 財政의 緊縮을 行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이다. 嶺南地方 災害의 實例로서, 顯宗年間~肅宗初가 災害의 規模나 持續期間으로 볼 때 특히 尤甚하였다. 이때의 饑民이나 方痛, 死亡者 數가 이를 立證해주고 있는데, 이 가운데 飢民數가 顯宗 13年 4月の 경우는 33萬名이란 數値를 보이고 있어 당시 人口의 22.1%가 災害를 당했던 사실도 考察해 보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被害의 數値도 때로는 被害地 守令들이 善賑의 功績을 認定받기 위한 方便이거나 아니면 事後 問責이 두터워 被害報告를 漏落시키는 事例가 많았으니 이와 같은 사실은 앞서 말한 「顯宗實錄」에서 明白히 밝혀지고 있다. 在任監司 가운데는 道民救恤이나 教學振興, 吏道確立 등 善政을 베푸는 者도 적지 않았으니, 즉 文獻에 의한 史料 및 善政碑 등 史蹟에 의거 할 때 44人이란 實績을 보여 주고 있어 道

민을 위한 政治가 크게 行하여 졌다고 볼 수 있겠다.

教育·文化事業의 實態를 보면 朝鮮時代는 國初로부터 農桑과 興學을 國家 統治理念으로 삼았기 때문에 中央에 成均館을 위시하여 각 邑마다 鄉校를 設立, 地方 教育에 寄與케 하였으며, 監司는 각 邑을 巡廻하면서 鄉校 教育의 實態를 調査하여 그 邑을 評價하였으며, 특히 守令이 教育에 誠意를 보이지 아니 할 때에는 罷職케 하였다. 그러나 朝鮮中期 이후 書院이 크게 勃興하자 相對的으로 鄉校의 講學機能은 衰退하였으며, 書院 또한 時代의 흐름에 따라 作弊가 심하자 景宗元年(1721), 당시 趙泰億 監司에 의해 慶尙道立으로서 唯一한 教育機關인 樂育齋가 設立되어 嶺南人才養成에 크게 寄與했던 것이다. 이 制度는 그 후 舊韓末까지 發展的으로 存續하였다는 사실로 미루어 樂育齋의 運營은 바로 嶺南의 教育·文化 發展에 크게 貢獻했을 것이 確實視된다 하겠다. 한편으로 監司는 小學이나 四書三經, 三綱行實, 五倫行實圖 등 三綱에 模範이 되는 圖書나 儒學獎勵에 필요한 각종 書籍을 刊布 함으로써 地方 文風振興에 寄與하는 方法도 있었으니, 즉 朝鮮時代 慶尙監營에 의한 刊行圖書가 8道監營 가운데 首位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嶺南의 文風振興에 寄與할 수 있는 또 하나의 立證資料라 하겠다.

慶尙監司로서 遷官 및 遷去한 事實을 살펴볼 때 內職으로 遷官된 者는 139人인 58.3%로 나타났는데 여기서 106人인 44.5%는 榮轉된 者라는 점에서 意義가 크다 하겠고, 다시 外職으로 遷官된 者는 監司 1人, 留守 2人으로 都合 3人 뿐이란 것을 알 수 있어 慶尙監司職은 8道監司 중에서도 首職의 位置에 있었음은 물론 內職陞進의 序列이 他官職 보다 높다는 事實을 알 수 있겠다. 한편 監司로서 個人的 身病이나 親病, 親喪 등 自意에 의거 遷去된 者는 24人인 10.1%, 黨爭이나 獄事 등 각종 事件에 連累되었거나 王命不從, 職權濫用, 職務怠慢 등으로 인한 罷職 또는 改差된 者가 48人인 20.2%로 나타나고 있어 他意에 의한 遷任이 比較的 적었다는 것을 考察할 수 있었다. 監司의 事務引繼는 앞서 言及함과 같이 鳥嶺 交廳亭에서 行하여 졌는데 引繼를 마칠 때 前任監司는 引繼文書인 <重記>를 作成·署名하여 印信·兵符와 함께 引繼함으로써 交代節次를 마치게 되지만 到任 당시 國王으로부터 받은 <密符>는 承政院에 親納토록 規定했던 점으로 미루어 監司職務의 重要性을 뒷받침 해주고 있다고 하겠다.

監司職 退任 후의 進路에 있어서는 먼저 高位의 顯職이나 榮譽之典의 경우는, 判書 가운데 最高要職인 吏曹判書를 歷任한 者가 89人, 相臣에 오른 者가 42人으로 要職의 進出이 많았다는 사실 외에도 文官으로서 最高 榮譽職인 文衡(大提學)이나 文衡被圈 또는 文任

(提學)의 職을 받은 者는 64人, 清白吏 11人, 耆老所入社 55人 등으로 나타났는데, 이와 같은 實績은 바로 監司 個個人的 人稟, 文名, 學德과 관련된 것으로서 특히 在任時 本道의 政治·行政이나 文化發展에 寄與할 수 있는 傍證資料로 評價된다 하겠다. 다시 最高官職의 경우는 正二品 이상 高位職에 陞進된 者가 148人으로서 在任 중 卒逝한 者 10人을 제외할 때 전체 65%라는 數值를 보였으며, 특히 在任監司 가운데 불과 21人 만이 本道 監司職에서 陞進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 慶尙監司의 職責은 左遷官이 아닌 陞進序列이 높은 要職임을 立證해 주고 있다.

慶尙監司의 個人 著作活動을 考察해 볼 때, 詩文 등이 收錄된 文集이나 기타 著述을 남긴 者가 112人(47%)이라는 점에서 그 實績이 매우 低調하다. 하지만 당시 時代的으로 볼 때 詩文과 儒學을 重視했던 時代이니 만큼 특히 이들 대부분이 文科出身이라는 사실로 미루어 文集을 남길만한 人物이란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原稿는 당시에 刊行하는 예가 극히 드물고, 死後 그들의 後孫이나 門人 등의 主管으로 蒐集하여 刊行하는 예가 일반적이므로, 지금까지 遺稿가 없다는 것은 대체로 詩文 등의 原稿를 蒐集, 整理를 못했거나 遺稿抄의 未刊行 또는 遺失했을 가능성이 크고, 한편으로는 著作者가 黨爭이나 각종 事件에 의한 被禍 등으로 그 原因을 定義해 보았다. 끝으로 慶尙監司로서 死後의 諡號를 追贈 받은 者는 112人으로서 전체 47.4%로 나타 났었다. 이 가운데 文名과 學德이 높은 者에게 내리는 <文>字諡號가 40人, 國家의 有功이나 盡忠報國의 心性으로 王命을 忠實하게 遂行했던 者에게 내리는 <忠>字諡號가 33人, 그리고 <孝>字 11人, <貞>字 6人的 順을 보이고 있는데, 이와 같은 慶尙監司의 諡號는 모두가 美諡號를 追贈받았다는 점에서 在任時 本道 文化發展에도 많은 貢獻이 있었다고 하겠다.

이상과 같이 監司制度를 중심으로 監司 個個人的 人稟·學識·德望 등 陰性的인 側面과 함께, 政治·社會·教育·文化 등 行政의 實態를 간추려 볼 때 一道를 專制하는 監司의 영향력이 該道의 發展에 중요한 關鍵으로 登場하고 있음을 고찰할 수 있어 嶺南의 文化發展이 있기까지에는 그 裏面에 監司의 힘이 크게 作用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끝으로, 本論文은 啓明大學校 學術研究費 支援에 따른 論文이다. 本論文을 위해 많은 指導를 해주신 本大學校 總務處長 金南碩 教授와 本大學圖書館 館長 禹茂夏 教授, 趙浩一 司書課長, 그리고 同僚司書 여러 분께 삼가 感謝드린다.

★ 參考文獻은 脚註로 代함.